

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| | |
|----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4 |
|----------|---|

제의년월일 : 2014. 7. 2.
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회장

□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

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

2014. 7. 2 (수)

<참고사항> ----- **관련근거**

-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 -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,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(상임위원 정수)
 -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, 여타 상임위원회 7명 이내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
 - 의장은 상임위원 배제,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허용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(상임위원회의 임기)
 -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(위원의 선임)
 - 상임 및 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